



2020 .02. 12

서울 행정 법 원

제 1 부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9구합200 보상금지급에 관한 청구 등
원 고 정일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10, 104동 302호
(영등포동7가, 아크로타워스퀘어)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555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7-2 대 126.3㎡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8수용-073 1호 사용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 128,788,110원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

결정이유

결정사항 제1항 기재 금액 4,401,555원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19구합217호)에서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위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상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7-2 대 126.3㎡의 구분 지상권 보상평가액 133,189,665원 - 위 토지에 관한 사용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 128,788,110원(갑 제6호증)

2020. 2. 11.



재판장

판사

안중화



판사

이현정



판사

황용남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0. 2. 11.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손상진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